

# 합 의 서

2016.11.16. 개최된 서울특별시청 노·사 협의회에서 노·사 쌍방은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 개정사항과 협의사항을 합의한다.

## I 단체협약 개정사항

1. 단체협약 제28조(유급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별표1]에 의한 일반 유급휴일과 경조사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07.4.13, '08.7.25, '11.9.26, '12.12.21, '14.9.2, '16.11.16)  
1~10(삭제 '00.12.22)
2. 단체협약 제36조(피복)"갑"은 매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피복(하계 피복은 4월말까지, 동계피복은 9월말까지)을 남·여 구분(색상 및 규격)하여 신축성 있는 기능성 작업복으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94.10.20, '96.11.8, '11.9.26, '14.9.2, '16.11.16)
3.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 ③ "갑"은 조합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병가는 연간 60일로 하되 기본급과 가족수당 및 임금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신설 '96.11.8, 개정 '00.12.22, '09.7.7, '11.9.26, '12.12.31, '16.11.16)
4. 제44조(퇴직금) 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11.9.26, 개정 '12.12.31, '16.11.16)

◆ 본 협약은 2016. 11. 16일부터 발효한다.

II

기타 합의사항

1. 조합원 만학시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00%를, 대학교 교육 과정은 구청장이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명절(설, 추석)격려품은 5만원 상당으로 한다. 단, 2017년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한다.
3. 휴게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체육시설(헬스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조합원의 건강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대외직명을 공무원으로 한다.
5.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 경비를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2회 실시한다.
6. 청운복지회관의 이중창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LED등 교체, 태양열 설치, 주차장 그늘막 설치 등 노후시설은 순차적으로 보수한다.
7. 조합원 문화체육 행사비로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최대한 협조한다. 다만, 추가지원 여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노조 행사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정한다.
8. 서울시립대 수시특별전형(고른기회입학Ⅱ전형)에 환경미화원 자녀 배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9. 조합원 전세자금 등 시중은행 대출에 대하여 서울시는 협조공문 발송 등 최대한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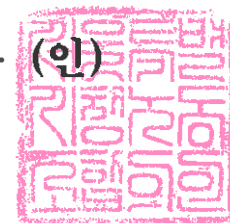
◆ 본 합의서는 2016. 11. 16일부터 발효한다.

2016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안재홍 (인)



# 단 체 협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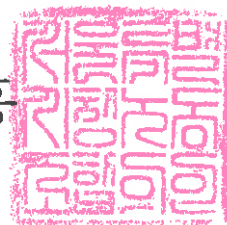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박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안재홍



# 단 체 협 약

## 전 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행정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 【노사호칭】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인 25개 자치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 대표인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을 “을”이라 칭한다. 이때 “갑”은 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사용자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청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 10. 20, '12. 12. 31)

제2조 【교섭단체 인정】 “갑”은 “을”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협의회 개최 등에 대하여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노조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청과 각 구청장은 “갑”과 “을”간에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04. 1. 10, '11. 09. 26, '12. 12. 31)

제3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갑”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협약기준의 원칙】 본 협약 중 노동제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체결의 경우에는 기존 협약의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협약의 기준】 본 협약의 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6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갑"이 정한 제규칙, 규정 및 "갑"과 조합원 개인 간에 성립한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7조 【조합가입】 ①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내 자치구 예산으로 채용된 환경미화원(지역, 가로, 공변관리, 기타)으로 한다.

(개정 '04. 1. 10, '12. 12. 31)

② 자치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신설 '04. 1. 10)

제8조 【비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신분에 있는 자.

② 서울시 및 자치구에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 해고된 자.

③ 그 외 탈퇴하였거나 제명된 자.(신설 '09. 7. 7)



##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9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갑"은 근로시간외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조합원이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내외교육, 각종 행사참가 등). 또한, "갑"은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94. 10. 20)

제10조 【조합전임 임원】 ① "갑"은 "을"의 전임에 대해 2명으로 조정하여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한다. 단 근로시간면제자는 5명으로 한다.

(개정 '95. 3. 17, '07. 4. 13, '11. 9. 26)

② (삭제 '07. 4. 13)

제11조 【전임자의 대우】 "갑"은 "을"에 전임되어 있는 전임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한 대우를 한다.

- ① 전임기간중 임금은 "을"이 부담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갑"이 부담한다.
- ② 신분 기타 처우는 일반종사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 ③ 전임 해제와 동시 "갑"은 원직에 복귀시킨다.

제12조 【조합비 징수】 "갑"은 조합원의 임금 지급시 조합비 징수에 대하여 협조한다.

### 제 3 장 근 로 조 건

제13조 【노사단체교섭 협의회】 "갑"과 "을"은 조합원의 단체협약,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쌍방 대표로서 노사단체교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 【협의회의 운영】 "갑"과 "을"이 노사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노사협의회와 별도 운영한다.

제15조 【협의위원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을 대표하는 각 10명 이내에서 동수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협의사항 효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 합의된 사항은 별도의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개정 '12. 12. 31)

제17조 【시설편의 제공】 ① "갑"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물(토지· 건물· 집기·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을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는 "갑"이 부담한다. 단, 통신의 경우 구내전화에 한한다.

- ② "갑"은 "을"의 요청과 "갑"의 인정이 있을 시 청소활동에 필요한 전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9. 7. 7)
- ③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합원 후생복지사업(산업시찰, 하계휴양, 해외견학 등)은 계속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09. 7. 7)

## 제 1 절 임 금

제18조 【임금】 임금 및 제수당은 노사합의에 따른다.(개정 '12. 12. 31)

제19조 【임금지급】 ① "갑"은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20일에 수당은 익월 10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95. 10. 20, '04. 1. 10, '12. 12. 31)

② (삭제 '04. 12. 18)



## 제 2 절 인사 및 임무



제20조 【조합원의 인사】 조합원의 인사권은 "갑"이 전담한다. 단, 시행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개정 '94. 10. 20)

제21조 【조합원의 주요임무】 조합원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조합원은 책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 10. 5)

1. 지역조합원 : 담당구역의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2. 가로조합원 : 담당구간의 도로(인도포함)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거
3. 공중변소관리조합원 : 공중변소의 청결유지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4. 기타조합원 : 각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수행

제22조 【해고의 예고】 "갑"은 조합원을 해고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을"에게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자의에 의할 때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다)
3. 소정의 복무기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거나 또는 연령이 정년에 달했을 때
4. 예산 및 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을"의 근무가 불가능 할 때

제23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일은 매년 12월말로 한다. 단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개정 '93. 10. 5, '99. 7. 14, '02. 1. 7, '03. 2. 24, '04. 1. 10, '08. 7. 25)

제24조 【제규정 제정】 "갑"은 조합원의 인사지침 및 복무규정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는 "을"과 사전 협의한다.

제25조 【우선채용】 "갑"은 순직자, 공상으로 인한 퇴직 후의 사망한 자의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한다.

### 제 3 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26조 【기본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작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과 계절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을"과 사전 협의한다.(공중변소관리인도 이에 준한다.) (개정 '03. 2. 24, '05. 6. 28)

제27조 【작업의 시·종시간】 작업의 시·종 시간은 청소업무의 특수성과 계절에 따라 "갑"이 정한다. 다만, "을"과 사전 협의한다.

제28조 【유급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별표 1에 의한 일반유급휴일과 경조사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07. 4. 13, '08. 7. 25, '11. 9. 26, '12. 12. 31, '14. 9. 2, '16. 11. 16)  
1 ~ 10 (삭제 '00. 12. 22)

제29조 【시간외, 휴일 및 야간근로】 "갑"은 재해 기타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삭제 '05. 6. 28)

② "갑"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당해년도 12월말에 지급하되, 지급일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2. 1. 7, '08. 7. 25, '12. 12. 31)

③ (삭제 '02. 1. 7)

④ (개정 '95. 10. 20, '05. 6. 28, '07. 4. 13, 삭제 '08. 7. 25)

⑤ 조퇴, 외출, 지참시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조퇴, 외출, 지참의 총 누적시간 8시간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 (신설 '12. 12. 31)

제31조 【특수업무수당】 "갑"은 청소업무의 위험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종사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32조 【가계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지급】 "갑"은 조합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석과 설날에 한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한다.  
(개정 '95. 10. 20, '96. 11. 8, '12. 12. 31)

#### 제 4 절 보건, 후생, 재해예방 및 보상

제33조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삭제 '12. 12. 31)

제34조 【정액급식비, 작업장려수당】 ① "갑"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매월 급식비를 지급한다.

- ② "갑"은 조합원의 작업 능률 제고를 위해 매월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 ③ (삭제 '12. 12. 31)

제35조 【건강진단】 "갑"은 조합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93. 10. 5, '99. 7. 14, '00. 12. 22, '07. 4. 13)

제36조 【피복】 "갑"은 매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피복(하계 피복은 4월말까지, 동계피복은 9월말까지)을 남·여 구분(색상 및 규격)하여 신축성 있는 기능성 작업복으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94.10.20, '96.11.8, '11.9.26, '14.9.2, '16.11.16)

1. 하계피복 : 작업복2착(탄력적 지급), 작업화1족, 우의(1년에 1착), 장화1족, 토시, 면장갑, 앞치마  
(개정 '93. 10. 5, '04. 1. 10, '11. 9. 26, '14. 9. 2)

2. 동계피복 : 작업복2착(탄력적지급), 방한장갑1켤레, 작업화1족, 방한화, 방한장화, 방한마스크, 방한목보호대, 귀마개, 토시, 면장갑, 앞치마  
(개정 '93. 10. 5, '04. 12. 18, '07. 1. 13, '11. 9. 26, '14. 9. 2)

제37조 【재해예방 및 휴게실】 ① "갑"과 "을"은 조합원의 재해방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전모:1개 ◦안전표지판:1개(가로조합원) ◦자외선차단용품(개정 '04. 1. 10, '11. 9. 26)

② 조합원은 청소 작업시에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 10. 5)

③ "갑"은 조합원의 휴식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휴게실을 설치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시설(온수, 전기, 난방기구 및 기타)에 대한 수리 요구시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94. 10. 20, 개정 '95. 10. 20)

제38조 【요양 및 재해보상】 ①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되,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3일 이내의 업무상 재해, 출근 중 사고, 기타 "갑"이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갑"은 치료비 및 요양기간 중 정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단, 산재가입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이전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개정 '00. 12. 22, '02. 1. 7)

② "갑"은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수령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한다.

③ "갑"은 조합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는 연간 60일로 하되 기본급과 가족수당 및 임금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신설 '96.11.8, 개정 '00.12.22, '09.7.7, '11.9.26, '12.12.31, '16.11.16)

④ 3항에 따른 추가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갑"의 허가를 득하여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휴직기간은 병가를 포함하여 총 6개월로 하고 매월 기본급과 가족수당만을 지급한다. 질병휴직 후 복직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상병으로 인한 휴직은 1회에 한한다.  
(신설 '12. 12. 31) 단, 중대질병의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무보수 휴직을 할 수 있다.('14. 9. 2)



제39조 【장해보상】 삭 제 ('00. 12. 22)

제40조 【일시보상】 삭 제 ('00. 12. 22)

제41조 【유족보상 및 장사비】 삭 제 ('00. 12. 22)

제42조 【보상금 지급】 삭 제 ('00. 12. 22)

제43조 【다른 손해보상과의 관계】 "갑"은 다른 보상을 받게 될 조합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87조 규정에 의한다.(지구수정 '97. 12. 23, 개정 '08. 7. 25)

## 제 5 절 퇴 직 금

제44조 【퇴직금】 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30일, 30.3일, 30.6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자구수정 '97. 12. 23, 개정 '02. 1. 7)

②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은 1967. 1. 1부터 적용한다.

③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노사 임금합의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96. 11. 8, '05. 6. 28, '12. 12. 31)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3년 이하의 의무복무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12. 12. 31, '14. 9. 2)

④ 업무상부상 및 질병으로 치료중 퇴직사유 발생시 제①항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신설 '97. 12. 23)

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휴무요양한 자가 퇴직할 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당해 휴무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무요양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97. 12. 23)

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신설 '11.9.26, 개정 '12.12.31, '16.11.16)

## 제 4 장 노 동 쟁 의

제45조 【쟁의제기】 "갑"과 "을"은 협의회에서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각 일방이 노동쟁의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조정중재 신청】 쟁의중재에 관하여는 쌍방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단독으로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불이익 금지】 "갑"은 조합원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한 쟁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협약의 기간 및 효력

제48조 【협약의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금협약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약내용 변경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49조 【기간 만료시의 효력】 협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개정 '07. 4. 13)

제50조 【협약의 효력】 (1) 협약기간 중에 "갑"과 "을"의 명칭 또는 사용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협약효력에는 변경이 없다.

(2)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 간 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 한한다. (신설 '09. 7. 7)

제51조 【협약의 공개】 단체협약 전문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한다.(신설 '12. 12. 31)

## 부 칙(1989. 8. 30)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쌍방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 부 칙(1990. 7. 20)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쌍방 1 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0. 7. 12부터 발효한다. 단, 제22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는 1991. 1. 1부터 시행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고 건

근로자대표 :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 이 기 흥

## 부 칙(1991. 6. 13)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쌍방 1 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1. 6. 1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해 원

근로자대표 :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 이 기 흥

## 부 칙(1992. 9. 18)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쌍방 1 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2. 9. 18부터 발효한다. 다만,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수반사항은 '93.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상 배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1993. 10. 5)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쌍방 1 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3. 10. 5부터 발효한다. 다만, 임금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예산 수반사항과 정년의 연장은 '94.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원 종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1994. 10. 20)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쌍방 1 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4. 10. 20부터 발효한다. 다만, 임금 및 후생복 지에 관한 예산 수반사항은 '95.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원 종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1995. 10. 20)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5. 10. 20부터 발효한다. 다만,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수반사항은 '96.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조 순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1996. 11. 8)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7.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조 순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1997. 12. 23)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1998.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직무대리 강 덕 기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 (2000. 12. 22)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1.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고 건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 (2002. 1. 7)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협약 발효 당시 근무 중인 조합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로 정한 일자에 퇴직한다.

1) 1943년생 : 2002년 12월 31일 퇴직

2) 1944년생 : 2003년 12월 31일 퇴직

② 노조전임자중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임기 중 정년에 달했을

경우(당해 임기 만료 전에 보선 등에 따라 임원이 변동된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상급단체 임기 만료일을 퇴직일자로 한다. 단, 이 협약 유효기간 중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조 【발효】 본 협약은 2002. 1. 7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고 건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기 흥

## 부 칙 (2003. 2. 24)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3. 2. 24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명 박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흥 성

## 부 칙 (2004. 1. 10)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4. 1. 10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명 박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흥 성

## 부 칙 (2004. 12. 18)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5. 1.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명 박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이 흥 성

## 부 칙 (2005. 6. 28)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5. 7.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이 명 박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07. 4. 13)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7. 5. 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08. 7. 25)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8. 7. 23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09. 7. 7)

제 1조 【별도규정】 본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09. 7. 7 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11. 9. 26)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11. 9. 26 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12. 12. 31)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13. 01. 01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14. 9. 2)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14. 9. 3.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주 진 위

## 부 칙 (2016. 11. 16)

제 1조 【별도규정】 본 협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법령에 의거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쌍방이 1통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3조 【발효】 본 협약은 2016. 11. 16.부터 발효한다.

사용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근로자대표 : 서 울 특 별 시 청 노 동 조 합 안 재 흥

[별표 1]

## 유급휴가 일수표 [제28조 관련]

구 분	대 상	휴일일수		
일 유 휴	주휴일	주 2 회	2 일	
	명 절	신정 1일, 설날 및 추석 각 3일	총 7 일	
	공휴일	국가가 지정하는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각 1 일	
	반 급 일	근로자의날, 노동조합창립일(12월4일)		각 1 일
		기 타	정년퇴직 특별휴가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자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 - 20년 이상 근무자	5 일 10 일 20 일
경 조 사 유 휴	결 혼	본 인	5 일	
		자 녀	1 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일	
	출 산	배우자의 출산	5 일	
	입 양	본 인	20 일	
	사 방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일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3 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일
특 휴	출 산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	출산전후90일	
	육 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	매일 1시간	
	모성보호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	매일 1시간	
	자녀 입영	본 인	1일	
	별 가	유 산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사 산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특별휴가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준용한다.